

참고 2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(학부모)

□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

(메뉴: 국세청 홈텍스 접속 > 첫화면 신청/제출 클릭 >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/연말정산간소화 클릭)

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

- (근로자) 소득·세액공제자료 조회: 매일 08:00~24:00
- (영수증 발급기관) 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출: 08:00~22:00
- (가부금 단계) 자료제출신청: 08:00~24:00 (12월 중)

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

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(자료제공자)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

-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용 필요
- 모바일 홈텍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
-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 가능
- 모바일 홈텍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

자료제공자의 인정이 가능한 경우

-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용 필요
- 모바일 홈텍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

미성년자녀의 경우

-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 가능
- 모바일 홈텍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

(근로자) 자료 조회

- 소득 세액공제조회/발급
- 소득 세액공제조회/발급(사업자)
- 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
- 조회되지 않는 의뢰비 신고센터
-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
-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

(자료제공동의)

- 제공동의 현황 조회
- 본인인증신청
- 미성년자녀신청
- 온라인 신청
- 팩스 신청
-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
- 제공동의 취소 신청

제공동의 현황 조회

연급 영수증 | 전자 세금 계산서 | 연말정산 간소화 |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| 로그아웃 | 즐겨찾기

미성년자녀신청 | 간소화 자료조회 | 자료제공동의 신청

귀속년도: [선택] [조회하기]

나(조회자)에게 자료를 제공받는 자 (현재)

동의일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자료제공동의범위	신청구분	비고
[현재는 비어 있음]					

나(조회자)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 (과거)

성명	주민등록번호	동의일시	취소일시	취소사유
[과거는 비어 있음]				

제3자에게 동의: 나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가 제3자에게 자료제공동의를 하여 취소됨 (자료제공동의는 1인에게만 가능)

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

동의일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자료제공동의범위	인증방법
[현재는 비어 있음]				

제공동의 현황 조회

미성년자녀신청 | 간소화 자료조회 | 자료제공동의 신청

귀속년도: [선택] [조회하기]

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

귀속년도: [선택] 주민등록번호: [입력] - [입력]

<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안내>

-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- 다만,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(미성년자)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[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]는 부양가족 본인 및 각종 금융정보 및 의뢰비 교육비 납입금역 자료 등을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, [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]는 실제 소득 세액공제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.
-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항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, 팩스 신청, 방문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성년이 된 자녀(97년 출생)는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하지만, 성년 자녀는 본인 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.
- 98년 출생자녀는 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 합니다.
- 특히, 군입대예정인 자녀가 연소신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[닫기] [신청하기]

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. 신청 후 즉시 자료 조회 가능

□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

(메뉴: 국세청 홈택스 접속 > 첫화면 신청/제출 클릭 >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/연말정산간소화 클릭)

-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을 권장함

(팩스신청 시 연말정산기간 국세청 팩스수신이 어려워 신청이 누락될 경우가 많음)

① 온라인신청방법

자료조희자(부모)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업로드하면 신청완료
 ② 팩스신청방법 : 자료조희자(부모)와 자료제공자(자녀)의 인적사항 및 관계 등 입력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함께 팩스(1544-7020)로 자료제공동의 신청